

#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7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09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,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신설, 개정하여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).
- 나. 65세 이상 노인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7호).
- 다.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,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8호).

##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덧붙임

- 지역보건법 제14조
-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
-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6. 4. 13 ~ 5.3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: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에 따른 협조
- 수원보훈지청 : “보건소 진료비 감면” 조례개정 협조 요청

#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보건소”를 “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여”를 “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 표에 의하여 산정하되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의료보험법 등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료보험”을 “국민건강보험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진료비”를 “진료비 및 수수료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동항에 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

7.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.
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·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의 2세환자,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상록수보건소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진료검사담당 김경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황윤숙 (행정5556)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<u>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..... ..... <u>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</u> ..... ..... .....
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<u>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.</u>	제3조(진료수가) .....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<u>요양 급여 비용</u> .....
제4조(약가)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<u>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여</u>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. 다만,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	제4조(약가) ..... ..... <u>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</u>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
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<u>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</u> 다만,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「 <u>의료급여법</u> 」 등..... ..... .....
제6조(기타수가) <u>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u>	제6조(기타수가) <u>국민건강보험</u> ..... ..... ...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진료비</u>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공익상 필요한 경우</p> <p>2.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</p> <p>3.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</p> <p>4. 이동진료(취약지역, 사회복지시설 등)</p> <p>5.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</p> <p>6.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. 다만, 응급 투약에 한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..... ..... ..... <u>1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</u> 2. ..... 3. ..... ..... 4. ..... 5. ..... 6. ..... ..... <u>7.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.</u> <u>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의 2세환자,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,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②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u></p> <p><u>1.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2.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</u></p> <p><u>3.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</u></p> <p><u>4.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</u></p> <p><u>5.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47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9. 14.  
제 안 자 : 경제·사회위원장

## 1. 수정 이유
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제9조제7호 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추가한다.(안 제9조)

# **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.

## 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 6. (생략)</p> <p>7. <u>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.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9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..... ..... .....</p> <p>1.~ 6. (원안과 같음)</p> <p>7. <u>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.</u></p> <p>8. (원안과 같음)</p>